

2022년도
본청2차 경제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2년도 본청 제2차[경제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9. 1. ~ 9. 7.(5일간) / 2019. 8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2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2건 (주의 9건, 시정 3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건 / 1,923,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2부. 끝.

주요 지적사항

본청2차[경제과]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2건	주의 9 시정 3		3건 1,923,000원
1	◦ 일상감사 이행 소홀	주의		
2	◦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주의		
3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4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19,000원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598,000원
6	◦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시정		회수 1,206,000원
7	◦ 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주의		
8	◦ 기업환경개선 보조사업 정산서류 미비	주의		
9	◦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10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1	◦ 통합발주 노력 소홀	주의		
12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상감사 이행 소홀

【현 황】

공 사 명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추정금액 (천원)
***** *****운영관리민간위탁 용역	*****운영관 리위탁용역 1식	19.08.02.	19.08.09. ~ 20.08.05.	**환경(주) □□□	327,472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일반입찰 사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 일 경우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 *****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에 대하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임에도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일상감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현 황】

공 사 명	착공일 준공일	도 급 자	계약금액 (천원)	폐기물처리 계약물량	비고
계(2건)			77,622		
*** 573번지 호우피해복구공사	20.11.11. ~ 20.12.21.	(주)**건설 □□□	61,762	76톤	폐 콘크리트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 (주차장)공사	21.03.19. ~ 21.04.06.	**개발(주) □□□	15,860	4톤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또한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 573번지 호우피해복구공사」 외 1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 증빙서류(간이 인수인계서, 계량증명서 등)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 535번지) 사면보강공사	18,190	**건설(주) □□□	22.04.22. (22.04.26. ~ 22.05.24.)	25,900	21,082	4,818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1.23. 일부개정, 2020.7.1. 시행)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로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3. 일부개정, 2022.6.2. 시행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조 삭제,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로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3. 일부개정, 2022.6.2. 시행)
- 그런데 「****(** 535번지) 사면보강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 제도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19,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천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계(2건)				19,820	19,701	119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옥상방수공사	20.11.13.	20.11.16. ~ 20.12.15.	(주)** □□□	13,140	13,047	93
****단지 *****표시기 설치공사	21.06.15.	21.06.18. ~ 21.08.06.	(주)*** □□□	6,680	6,654	26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1호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산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옥상방수공사」 건에 대하여, 시공 중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보전비로 처리·정산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에도 별도 정산 없이 준공금을 지출하여 **93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단지 *** ****표시기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준공 시 환
경보전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산
없이 준공금을 지출하여 2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과오지급 된 공사대금 119,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98,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천원)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2021년 ****단지 유지관리공사	21.05.28.	21.06.03. ~ 21.07.14.	**건설(주) □□□	42,199	41,601	598

【위법부당사항】

- 건설 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2021년 ****단지 유지관리공사」 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으로 안전시설비 항목에 안전모(6개), 안전화(6개), 안전조끼(6개)를 구입하여 지출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정산서에 제출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안전모(3개), 안전화(3개), 안

전조끼(3개)만 확인되어 정산내역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598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과오지급 된 공사대금 598,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206,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현 황】

사 업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금액(천원)			비 고
				최종지급액	적정지급액	회수액	
계(3건)				143,284	142,078	1,206	
****단지기반시설 (단지내도로)포장 공사	19.10.14.	19.10.17. ~ 19.12.04.	**건설(주) □□□	43,750	43,565	185	
*** 573번지 블록설치공사	21.05.28.	21.06.03. ~ 21.07.19.	(주)**개발 □□□	57,335	56,573	762	
2021년 ****단지 유지관리공사	21.05.28.	21.06.03. ~ 21.07.14.	**건설(주) □□□	42,199	41,940	259	

【위법부당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6. 경비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은 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관 4. 재료비에는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운임 등)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단지 기반시설(단지내도로) 포장공사」 외 2건의 공사 원가 계산 시 보조기층 및 혼합골재 운반비를 경비항목이 아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각 항목으로 내역서를 작성, 원가계산을 하여 1,20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과오지급 된 공사대금 1,206,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민간위탁 수탁자 및 성과평가결과 미공개 현황

연번	사업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의회 동의일자 (위탁일까지 기간)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성과평가 실시/공개여부	비고
1	****단지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환경(주)	2020.8.8.~ 2023.8.7.	2020. 6.22. (46일전)	부	2020.5.31./여	1인입찰 수의계약
2	****시장 내 *** 등 ****운영 민간위탁	***** **회	2021.4.1.~ 24.3.31.	2021. 3.18. (14일전)	부	2021.2.2./부	수의계약 /재위탁
3	****시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 **회	2022.1.1.~ 24.12.31.	2021. 12.13 (19일전)	부	해당없음	수의계약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과 기존 수탁자와의 기간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18조(성과평가)에는 모든 위탁사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단지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외 2건에 대해서 의회동의일이 위탁시작 14일전부터 46일전 까지로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동의 절차를 지연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후 수탁기관 위탁사항(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성과평가를 지연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업 환경개선 보조사업 정산서류 미비

【현 황】

○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내용	비고
		계	군비	자부담		
2020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주)****	21,000	9,916	11,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숙사 및 휴게시설 환경개선 - 건설업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 미첨부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주)**	10,000	5,000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숙사 창호교체 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주)**식품	10,769	5,384	5,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실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주)**공장	18,000	9,000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개보수 공사 - 건설업등록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미첨부 	
	****(주)**공장	27,000	10,000	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실 설치 및 샤워실 개보수 - 건설업등록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미첨부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공업(주)	8,100	4,050	4,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및 구내식당 개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주)**	24,000	6,600	1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리모델링 공사 - 건설업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 미첨부 	
2021년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테크(주)	5,984	2,959	3,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개보수 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첨부 	
	**기업(주) **공장	20,205	10,000	1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장 등 환경개선 공사 - 건설업등록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미첨부 	
	**기업(주)	24,383	10,000	14,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실, 화장실 시설 개보수 공사 - 건설업등록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미첨부 - 하자보수기간 부적정(6개월 → 1년) 	
	*****식품	22,000	10,000	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실, 환풍기, 조명설치 공사 - 건설업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 미첨부 -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위법부당사항】

가. 건설업등록증 미첨부 및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경제과에서는 관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환경개선 및

공장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군비 50%, 자부담 50% 재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 사업은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교부조건에 명시함.
-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제 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다고 규정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의 규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전기공사의제한등)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기업 환경개선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공사비 15백만원 이상인 (주)****의 기숙사 및 휴게시설 환경개선공사 외 6건의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첨부되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적정한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 *****식품의 2021년 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휴게실, 환풍기 설치 공사와 조명설치 공사를 하면서 조명설치 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인테리어 공사업체에게 일괄발주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총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하는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 및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현 황】

○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성명	사역기간	수행업무	일당 (천원)	총 보수 지급내역	공개 채용 여부	구비서류	가족채용제한 확인서 징구여부	비고
□□□	22.6.7.~6.17. (7일 종일, 2일 반일)	계량기 기물조사	100	급여 800천원 주휴 100천원 급식 32,670원	부	표준근로계약서 출석부	부	
□□□	22.6.7./6.15. (2일)	계량기 기물조사, 수리 등	550	임차비 600천원 인건비 500천원	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납품서	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기간제 관리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 인원·예산관리)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채용)에 따라 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영동군 기간제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채용 시 갖추어야 할 개인별 구비서류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규정해 놓았으며,
-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제18조(보수)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서의 일용단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해당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규정함.

-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5.19.시행) 제10조에 따라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별지제9호서식)를 제출받아 채용예정 기간제 근로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함.
- 그러나, 경제과에서는 2022년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경제과-22069, 2022.5.4.)을 수립하였으나, 계량기 기물조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등이 포함된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 기간제 운용계획¹⁾과 달리 계량기 기물조사 요원을 채용했으며,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이력서 등 기본적인 개인별 구비서류 및 비공개 채용에 따른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도 징구하지 않고, 1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 또한, 「2022년도 영동군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 보통인부(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의 1일 노임단가는 73,280원이나 기간제근로자 □□□의 경우 예산편성기준보다 높은 1일 100,000원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으며, 전문기술이 필요한 1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나 차량 및 장비임대, 기술료, 출장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여 1일 550,000원으로 노임단가를 책정하여

1) 「2022년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 알림」, 행정과-22471(2021.10.7.) : 채용인원 1명, 채용기간 28일

근무상황부 대신 납품서로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는 등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 황】

○ 집행내역

지출일	지급명령번호	적요	지출액	채주	부적정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비고
2019.10.23.	472	2019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2,343,000	**쇼핑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020.09.21.	352	2020 착한가격업소 물품 구입 지원	3,775,200	**마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021.10.28.	342	2021 착한가격업소 물품 구입 지원	3,366,000	**마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기본 경비 항목으로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유지와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중 하나인 일반 운영비에 속한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 및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제1항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등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물품 등은 인센티브성격의 지원물품으로 보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경제과에서는 “2019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건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통합발주 노력 소홀

【현 황】

○ 용역발주 현황

용역명	내부결재	완료보고	금액(원)	비고
****단지 진입도로(****단지) 제초 작업	2020.06.16.	2020.07.02	4,800,000	
****단지 내 소공원 및 내부도로 제초작업	2020.07.16.	2020.08.19	4,900,000	
****단지 진입도로(****단지) 제초 작업	2021.06.04.	2021.06.21.	4,800,000	
****단지 내 소공원 및 내부도로 제초작업	2021.07.14.	2021.08.10.	4,900,000	
****단지 도로변 및 소공원 제초작업 집행	2022.07.12.	-	4,860,000	
****단지 내 도로 제초작업 집행	2022.07.27.	-	4,980,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 제2장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2022. 6월부터 ~ 2022. 7월까지 매년 ****단지의 제초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수행 장소 및 시기를 감안할 때 단일사업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 따라 내역서 작성 후 재무과에 의뢰하여 통합발주로 추진하여야 했으나, 분할발주로 단순견적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통합발주 노력을 소홀히 함.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현 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제목	내부결재	품목	수량	지출과목	비고
1	경제산업 업무협의 관련 부처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2019.08.01.	와인	4set	업무추진비	
2	일라이트 업무협의 관련 부처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2019.08.08.	복숭아	2상자	업무추진비	
중 략						
45	내방객 제공용 지역 홍보물품 구입	2022.05.13.	와인	10set	업무추진비	
46	내방객 방문에 따른 지역 홍보물품 구입	2022.05.30.	일라이트비누	10개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경제과에서는 2019.08.01. ~ 현재까지 “경제산업 업무협의 관련 부처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등 총 46회에 걸쳐 특산품 또는 홍보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경제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